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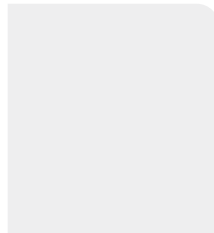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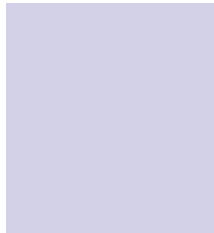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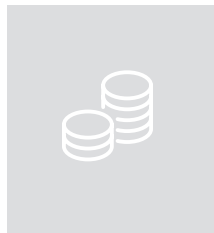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byungj@kipf.re.kr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kyungho@kipf.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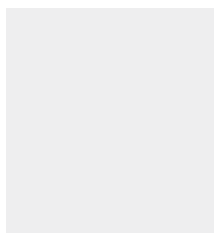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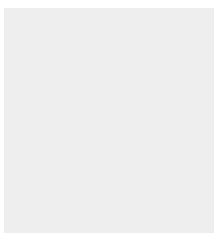
- 01 배경
- 02 부동산 보유세 부담과
가격안정효과
- 03 제도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2022.11.18.
No.13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6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유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본고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의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요약 정리하였음. 또한 공청회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함께 소개하고자 함



주제 발표 요약

- 보유세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이 높아졌고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되어 부동산 보유세수는 급속히 증가
 - 14.3조원(2017) → 20.0조원(2020)
 - 부동산 세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보유자의 부담 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세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임
- 보유세 부담은 2020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이며, 부담구조는 역진적이며,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음
 - 보유세수는 GDP 대비 1.04%(2020)로 OECD 회원국 평균 1.02%와 유사하며, 소득분위별 보유세 부담률은 저소득층 부담률이 높은 역진적인 구조
 - 보유세 부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 9.13 부동산 대책은 주택가격 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크기는 상승률 1%p 이하 하락에 그침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 조정을 통해 소득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율은 가격 변화 대신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전병목·송경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6. 27.'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01 배경

- 최근 부동산 보유세수는 가격 상승과 보유세 강화 조치로 급속히 증가
 -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3조원에서 2020년 20.0조원으로 증가
 -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65조원(2017)에서 3.60조원(2020), 6.13조원(2021)으로 증가
 - 납세자 수는 2017년 39.7만명에서 2021년 101.7만명으로 증가
 - 과표를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시장가액 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
- 부동산 세부담 증가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이루어져 주택보유자의 부담 증가,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우석진·전병힐, 2009)
 - 주택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권의 세부담 전가 가능성도 높임

- 부동산 보유세수의 변화 원인과 보유세 가격안정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보유세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

- 보유세 부담의 소득 대비 부담수준, 재분배 기능, 보유자 기대와의 괴리 등을 중심으로 평가
- 보유세의 가격안정효과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

02 부동산 보유세 부담과 가격안정효과

1. 보유세 부담과 변화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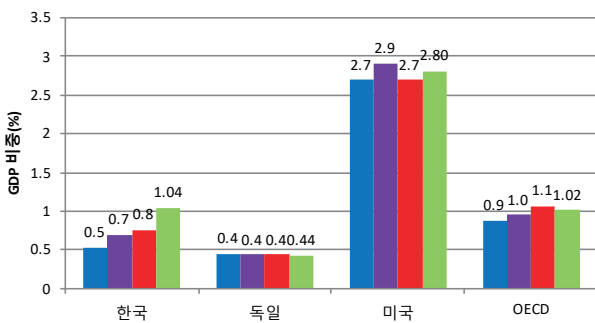
-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수준은 GDP 대비 1.04% (2020)로 OECD 평균 1.02%와 유사한 수준
 - 보유세 부담수준은 보유세의 편익연계 여부, 다른 지방세 부담수준 등과 연계되어 해석될 필요
 - 반면 부동산 거래세수는 GDP 대비 3.3%(2020)로 OECD 평균 1.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
 - 보유세와 거래세 합계 중 보유세의 비중이 약 30% 수준으로 거래세가 갖는 매물잠김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보유세 중심구조로의 전환은 미흡한 실정
- 부동산 분야의 높은 세부담에는 조세제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보유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 빈번한 거래 등의 영향도 포함
 - 부동산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유세 실효세

율(보유세수/민간보유 부동산 자산가치)은 낮으나 세 부담은 높음

- 높은 가격과 빈번한 부동산 거래관행은 높은 부동산 거래세수의 원인
- 특히 주택을 통한 자산축적 관행과 이를 반영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관대한 과세제도 등으로 보유세를 통한 수요억제효과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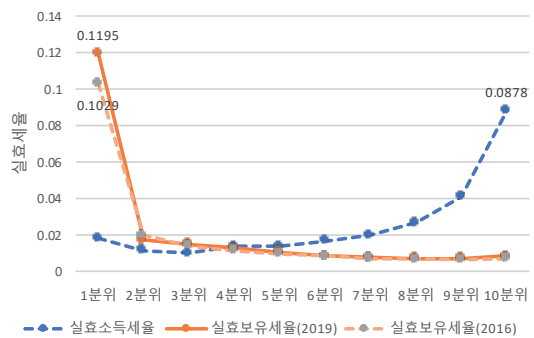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짐
 - 2019년 기준 소득분위별 실효보유세율(보유세/경상소득)은 소득 1분위가 11.95%로 10분위의 0.85%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2016~2019년 기간 동안 보유세의 변화 추세 역시 역진도는 완화되었으나 소득1분위의 실효세율 인상 폭이 1.66%p로 상당한 부담

그림 1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수



자료: OECD.stat.

그림 2 가계 소득분위별 보유세 부담수준



주: 실효세율은 세부담 있는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비율의 평균 값.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연말정산 공제 후 합계금액이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0.

- 주택가격 상승과 보유세제 인상 등은 주택보유자의 은퇴 등 소득 감소와 함께 체감 세부담을 높여 납세자의 제도 순응성을 낮추는 요인
-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납세순응성에는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
 -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보유)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
 -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보유세의 가격안정효과

- 송경호·권성오(2020)는 2018년 9.13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친 효과를 분석

- 동 대책은 공시가격 12.5억원(1주택), 9.5억원(일반 2주택),¹⁾ 6억원(조정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인상하는 조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거래가 자료를 패널데이터 형태로 가공하여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으로 분석

- 9.13 대책으로 모든 공시가격 구간에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나 그 크기는 제한적임
 - 다주택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공시가격 3억~6억 원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0.57%p(18.72%→18.15%) 감소하였으나, 하락 비율은 3% 수준에 그쳐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
 -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의 가격 상승률 하락폭이 1.49%p(25.16%→23.66%)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그중 제도효과는 0.92%p로 전체 상승률에 비해 그 영향이 미미함

03 제도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부담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부담 상한제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여 소득수준 및 증가율에 적합한 부담 수준으로 조정
 - 근본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여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제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언1)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과 해소

- 상위자산가 과세수단인 종합부동산세의 역할을 감안하여 주택 수 대신 과표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 주택 수 기준은 서울(강남)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가격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음
- 세율수준을 2018년 기준 단일 누진세율체계로 환원하거나 2019~2020년의 약한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 후 단일 누진세율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가능

1)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높아지는 과표 3억원 기준(1주택자, 일반 2주택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를 적용하여 산출

(제언2) 세부담 대상 및 증가속도 관리 필요

- 적절한 부담 대상 설정 및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기본공제금액(6억원, 1주택자 11억원), 세부담 상한제 등을 개선할 필요
 -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
 - 부부 재산공유 등 주택소유 형태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본공제금액 조정
 - 세부담상한제도(150%/300%)는 과표기준 제도 전환을 감안하되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105%/110%/130%)를 참조하여 130~150% 수준으로 하향 조정
 - 전체적으로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 변화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를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

(제언3)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국제적 운용사례, 편익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다만 부동산 가격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누진성 약화, 종합부동산세 재원의 지역형평화 기능 약화는 정책 전환의 비용임

(기대효과)

- 납세자 수용성 높은 세제로의 개선을 통해 형평성과 안정성 확보
 - 미래조세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부담능력과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 가능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보도자료, 2018. 9. 13., p. 3.
 - 국세청,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0. 9.
 - 박정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나보포커스』, 제44호, 국회예산정책처, 2022. 4. 22.
 - 송경호 · 권성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 주택시장, 8.2대책, 9.13대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우석진 · 전병힐,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제2권 제2호, 2009, pp. 87~119.
 - 윤영훈,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조세재정브리프 제108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5. 21.
 - 전병목·이철인,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4호, 2021. 1., pp. 69~106.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7; 2020.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원자료, 2020.
- 〈웹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종합부동산세」, <https://tasis.nts.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https://kosis.kr/index/index.do>
 - OECD.stat, “Revenue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전문가 토론 요약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 편익과세 관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주택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함
 -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의 재산세율이 동일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세수입이 적게 발생함
 -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2008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함
 -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할 경우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정수입(즉, 지방공공재화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준을 토대로 재산세율을 정해 과세하고, 과세표준이 낮은 지역은 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하여 지나치게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지방교부금 제도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재산세 강화로 인한 세수입 증가와 취득세 완화로 인한 세수입 감소가 유사하도록 세수 중립적인 관점에서 취득세를 개편하는 것도 필요함
 - 지자체마다 재산세 강화로 인한 세수입 증가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취득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산세 비중이 증가하고 재산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취득세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나 역진적인 세금이 되었음
 - 최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중가 2주택 보유자가 훨씬 많은 보유세를 부담함
 - 2주택자의 경우, 부부가 1주택씩 보유하는 경우보다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몇 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
-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은 6%로 이 세율로 15~17년간 세금을 내면 주택 한 채 가격을 세금으로 내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상 세금으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한을 300%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함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을 기준으로 잡고 상한을 계산하는데, 이로 인하여 3배가 아닌 5~6배까지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증과는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볼 때, 보유세 증과는 장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의 재고량을 감소시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보유세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음
- 실제로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을 상승시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우석진·전병힐, 2009)
- 현재 우리나라 민간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보면, 전체 가구의 38.1%인 약 800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음(2020년도 기준)
 - 이 중 174만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에는 약 150만 가구, 주택보유자 겸 임차가구가 80만 가구로 약 390만 가구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민간 임대인의 주택에 거주함
 - 결국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개인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390만 가구인데, 이들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과로 임대료 상승이라는 충격을 받게 됨
- 즉, 보유세 증과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시도를 멈추고, 단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보유 수 기준 증과규정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함
 - 다만, 지방 불균형 문제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항목으로 포함하되 이를 국세나 도세 등으로 분리하고 시도 내에서의 자원 배분, 시도 간 자원 배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고려해야 함

● 보유세 부담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함

- 그러나 물가 상승률 등에 연동해서 보유세 금액을 제한하고 신규로 매매가 일어났을 때에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함
 - 이 방식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1978년 주민제안13호와 유사한 제도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택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주민들 간에 보유세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그러므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의 조정을 통해 보유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 원인으로 정리해보았음

- 첫째, 조세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음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가지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
 - 조세정책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은 대비되는 이념으로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 마련임
 - 특히 형평성은 보유세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강조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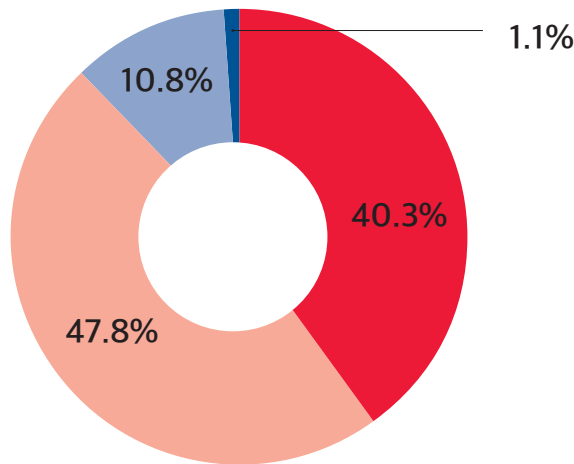
- 또 다른 이유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정책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 겸 노후보장책의 의미를 가지므로 '주택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 안전하며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소위 '갭 투자'나 '영끌 투자'을 하는 것임
 - 전세제도 때문에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높게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쉬워 수요억제 효과가 작동하기 어렵고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고 결과적으로 집값도 다시 올리는 역효과가 일어나기 쉬움
- 종합부동산세는 추구하는 목표나 방법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보유세는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¹⁾

●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 '매우 불안정' 40.3%, '대체로 불안정' 47.8%로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8.1%로 나타남

부동산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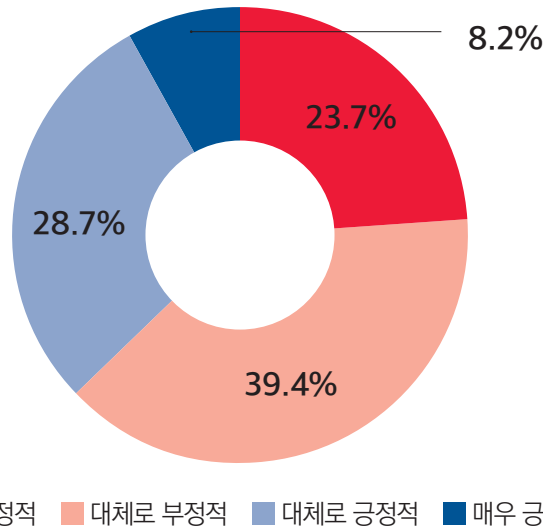
■ 매우 불안정 ■ 대체로 불안정 ■ 대체로 안정 ■ 매우 안정

1) 최근 상승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식과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7월 6~13일 1주일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였음. 해당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

●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 응답자의 63.1%가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시장 안정에 기여한 영향을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 + '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하였으며 긍정 평가는 37%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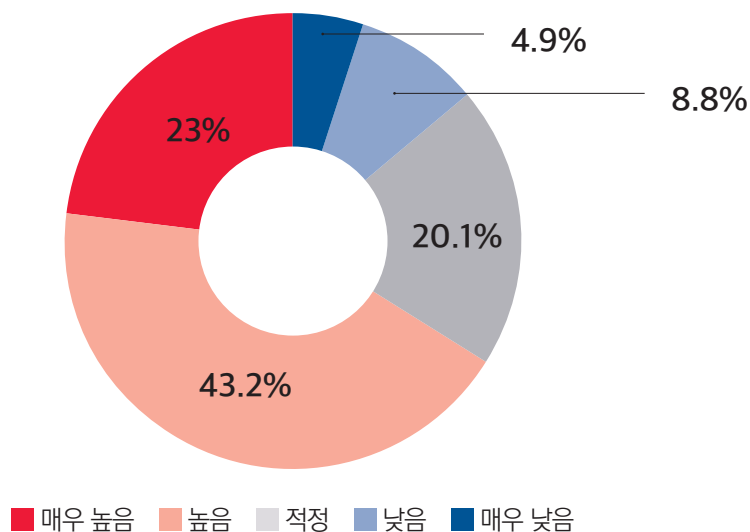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의 부동산 시장 안정 기여도



●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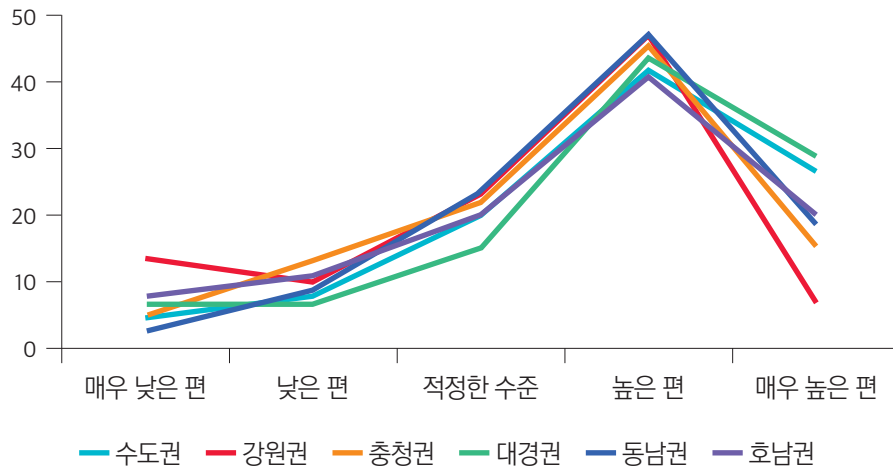
- 세부담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6.2%('높음' 43.2%+'매우 높음' 23%)로 나타남
- 특히 권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대경권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고, 다음으로 수도권, 동남권 등의 순으로 나타남²⁾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도



2) 부동산 보유세 부담에 대해서 1점을 '매우 낮은 편', 5점을 '매우 높은 편'으로 하여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대경권이 3.82점, 수도권 3.78점, 동남권 3.70점, 호남권 3.56점, 충청권 3.53점, 강원권 3.23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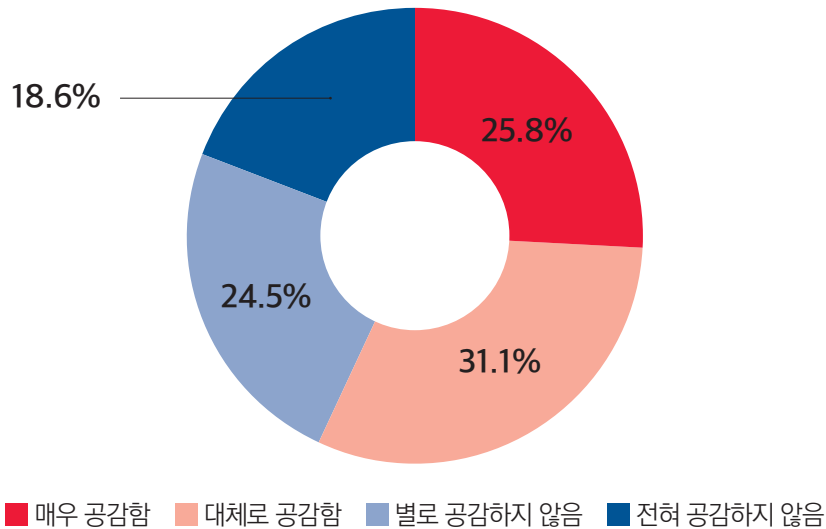
보유세 부담에 대한 권역별 인식



●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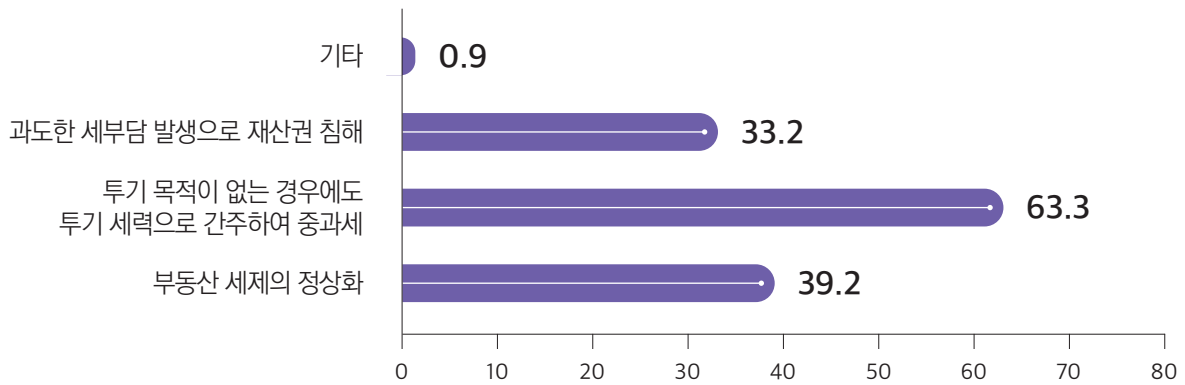
- 공감한다는 의견이 56.9%('매우 공감함' 25.8%+'대체로 공감함' 31.1%)로 나타남
-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한다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음
-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한 공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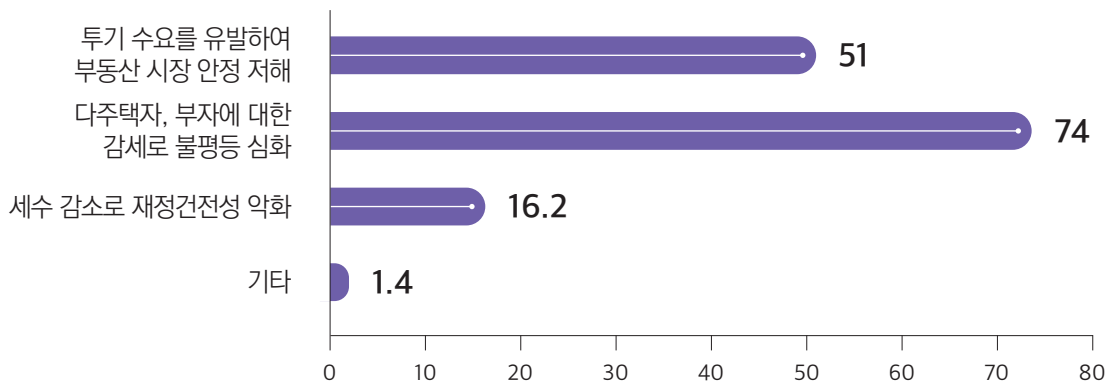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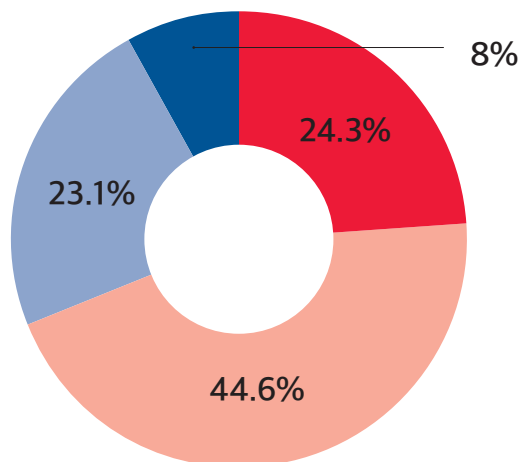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지 않는 이유



●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까?

- 공감한다는 의견이 68.9%('매우 공감함' 24.3%+'대체로 공감함' 44.6%)로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음' 23.1%+'전혀 공감하지 않음' 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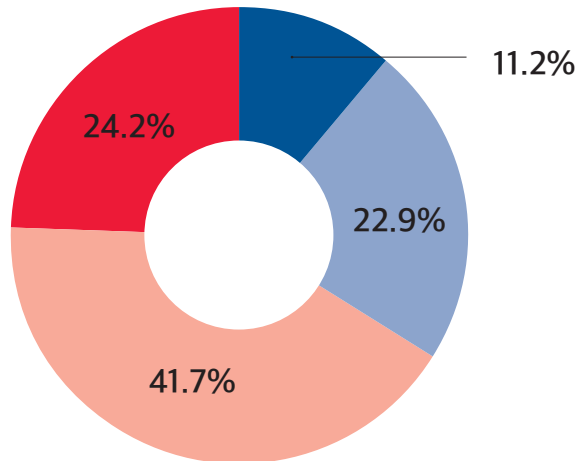
■ 매우 공감함 ■ 대체로 공감함 ■ 별로 공감하지 않음 ■ 전혀 공감하지 않음

조세재정 Brief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5.9%가 '대체로 공감함' 또는 '매우 공감함'으로 응답함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 대한 공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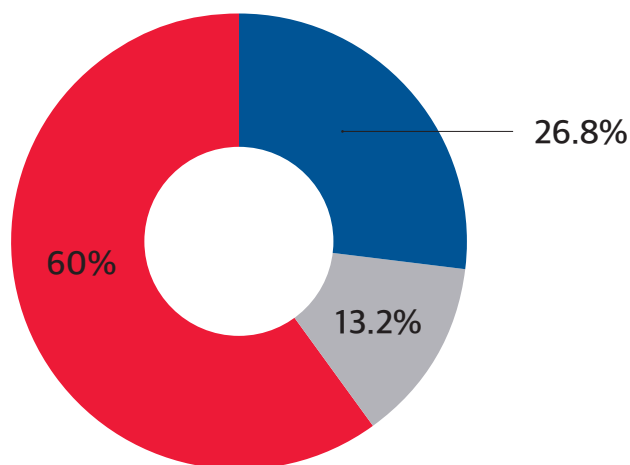


■ 매우 공감함 ■ 대체로 공감함 ■ 별로 공감하지 않음 ■ 전혀 공감하지 않음

○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이 감소한다면 새로운 주택을 매입할 것입니까?

- 세부담이 감소하면 수요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음. 이에 부동산 세부담이 완화된다면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음
- 이에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26.8%)' 하겠다는 의견보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60%)'에 응답한 비율이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남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감소 시 새로운 주택 매입 계획 유무



■ (여건이 되더라도) 당분간 의향이 없음 ■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 고려 ■ 잘 모르겠음